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자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4월 24일(월)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4. 7. 성북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115호)

나. 회부일자: 2023. 4. 11.

다. 상정일자: 제29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23. 4. 18. 상정·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가. 제안이유

가. 관내 미취업청년들에게 취업 시 필요한 각종 국가자격시험, 어학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의 응시료를 지원하여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역량 강화를 통한 취업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나. 기존 조례상 상위법명과 달리 작성되어있는 조항을 수정하여 일치시키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미취업청년 자격증 및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 근거 규정 명시 (안 제8조 4항) 및 재정부패방지를 위한 구체적 규정 신설(안 제8조 5항)

나. 법령에 맞추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수정(안 제15조 5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구의 미취업 청년들이 취업 시 필요한 각종 자격시험, 어학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의 응시료를 지원하는 사업 근거를 신설하여 청년들의 구직활동 관련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취업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안 제8조(고용 확대 및 취·창업지원) 제4항 및 제5항을 신설하여 미취업청년 자격증 및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 근거를 만들었음.
 - 제4항 :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미취업청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격증(어학능력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응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항 : “지원대상의 범위·요건·절차·선정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미취업청년 자격증 및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 주요내용

- 지급대상 : 2023년 1월 1일 이후 성북구 거주중인 미취업청년 (19~39세), 600명
- 세부기준 : 신청일 현재 기준 미취업 또는 주 26시간 이하 단기 근로자
- 지원내용 : 1인당 10만원 이내 응시료 실비 지원
- 지원종류 : 어학능력시험(토익 등),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및 국가자격시험(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등
- 사업일정 : 7월 1일 신청 접수 시작 예정 ~ 예산 소진 시
- 사업예산 : 6,300만원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미취업청년들이 취업시 필요한 각종 자격시험, 어학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응시료를 지원하는 사업 근거를 신설하여 청년들의 구직활동 관련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취업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4월 24일(월)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4. 7. 성북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116호)

나. 회부일자: 2023. 4. 11.

다. 상정일자: 제29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23. 4. 18. 상정 · 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안전생활국장 한재헌)

가. 제안이유

우리구에서는 창업 3년이하 초기 창업기업에게 사무공간 및 전문적인 창업보육과 멘토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벤처창업지원센터를 비영리 법인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2023. 6. 22.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풍부 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현황

○ 건 물 명 :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211(장위동 65-154)
- 규 모 : 대지 1,825㎡, 연면적 1,368㎡(지하1층 ~ 지상4층)

○ 공간구성

층 별	면적(㎡)	주요시설
4층	40	보육실
3층	320	보육실
2층	320	보육실, 노동권익센터
1층	320	멀티미디어실, 회의실, 보육실, 성북구상공회
지하1층	368	보육실, 중장년기술창업센터

나. 위탁예정기간 : 2023. 6. 23. ~ 2026. 6. 22.(3년)

다. 위탁방법 : 심사위원회 적격심사 후 선정

라. 위탁사업의 범위

-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운영
 - 입주기업 심사 및 선정
 - 창업지원, 정보제공, 멘토링 등
- 구청장이 벤처창업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마. 기존 위탁현황

기관명	대표자	시설명	위탁기간 (최초위탁일)
한성대학교	이창원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2020. 6. 23. ~ 2023. 6. 22. (2000. 3. 23.)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 본 동의안은 초기 창업기업에게 사무공간 및 전문적인 창업보육과 멘토링 등을 지원하고 있는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를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¹⁾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것임.

○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현황

- 위 치 : 화랑로 211(장위동 65-154)
- 시설현황 : 대지 1,825㎡(약 552평), 건물 1,368㎡(413평),
지하1층/지상4층
- 입주현황(26실) : 보육실 21(입주 19, 공실2), 상공회 2, 노동권의
센터 1, 중장년센터 2
- 개 원 일 : 2000. 5. 30.
- 운영위탁 : 한성대학교, 2020. 6. 23. ~ 2023. 6. 22. (3년)
- 인력현황 : 비상근(센터장, 한성대교수), 상근 1명(총괄매니저, 계약직)
- 사 업 비 : 6,000만원(민간위탁금)

○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으나 사업화 능력이 미약한 예비 창업자들을 위해 작업장을 제공하고 경영지도 및 자금지원 등을 해주는 곳으로,

1)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요성,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29.)

○ 우수·벤처기업 유치 및 육성을 통한 지역 고용창출 기회를 제공하고, 한성대학교의 유능한 인력 및 건실한 우수 중소기업의 관내 유입으로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파생 효과를 통해 지역발전 및 경제 활성화 도모할 수 있음.

○ 성북구 소재 사업체를 대상으로 벤처창업지원센터에서 질적으로 우수한 창업강좌, 경영컨설팅 등의 각종 창업지원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을 통해 관내 기업에 대한 직·간접적인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등 관내 소재 중소기업의 종합 지원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 성북구의 적극적인 기업 지원과 한성대학교의 우수한 기술적·인적자원을 융합하여 모범적인 산(産)·학(學)·관(官) 협력을 실현하고 있음.

○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²⁾에 따라 성북구 장위동에 설치한 시설로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구청장이 제출한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 117조³⁾ 및 관련 조례 등 법령에 위배 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2) 제2조(설치) 벤처기업의 창업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벤처기업 창업지원센터 (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5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정보제공 및 경영지원등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3)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4월 24일(월)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4. 7. 성북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117호)

나. 회부일자: 2023. 4. 11.

다. 상정일자: 제29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23. 4. 18. 상정 · 의결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가. 제안이유

상위법인 「도서관법」의 전부개정(법률 제18547호, 2022. 12. 8. 시행)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국민의 정보 접근권 보장 및 독서증진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도서관법」 전부개정에 따른 상위법 인용 조문 변경(안 제1조 제3조 제18조)

나. 「도서관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종전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규칙」을 폐지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안 제19조~제24조)

다. 조례[별표1]에 개관 예정인 ‘오동숲속도서관’ 추가 및 조례[별표

2]의 수수료 및 사용료에 대한 규정을 현행화하여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전부개정(2022. 12. 8. 시행)에 따라 인용조문의 변경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종전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규칙」을 폐지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안의 주요 변경 내용은

－ 안 제1조(목적) : 「도서관법」 제27조 및 제29조 → 제29조 및 제33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도서관 및 각종 자료를 공중에 제공하고 도서관 시설물을 이용하여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사회 문화·예술진흥과 정보화,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9조 및 제3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정보이용, 독서진흥,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안 제3조(정의) 제1호 : 「도서관법」 제2조제2호 → 제3조제2호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제3조(정의) -----

용어의 뜻은 <u>다음 각 호와 같다.</u> 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도서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4. “사용료”란 도서관의 <u>시설 및 물품</u>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대가를 말한다. 5. (생략) 6. “부대시설”이란 도서관의 <u>세미나실·문화교실·소강당·개인연구실·북카페</u> 등을 말한다. 7. “수강료”란 <u>구립도서관의 문화강좌</u> 수강을 신청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 <u>다음과</u> -----. 1. ----- -란 「도서관법」 제3조제2호-- -----. 2. ----- <u>시설</u>----- ----- -----. 3. (현행 제5호와 같음) 4. ----- <u>세미나실·소강당·북카페</u> ----- -----. <삭제>
---	--

－ 제9조제2항제4호 : 만 18세 → 18세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정비 사항)

－ 안 제18조 제2항 삭제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현행	개정안
제18조(<u>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u>) (<u>조제목 개정 2013. 12. 31</u>) ① 도서관은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타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u>있고</u> 이용가치가 없거나 훼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제18조(<u>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u>) ① ----- ----- ----- ----- -- <u>있고</u>, ----- ----- --.

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수탁시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 수탁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 범위는 연간 전체 보유장서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손실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② -----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 ----- ----- --.
---	--

－ 안 제19조부터 안 제23조까지 : 「도서관법」 제 34조제3항4)에 따라 종전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규칙」을 폐지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

현행	개정안
제19조(위원회 설치)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제19조(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 4) 제34조(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등) ② 공립 공공도서관은 해당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하게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문화계 · 교육계 · 도서관계자 등을 포함한 전문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삭제

<신 설>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2. 관내 도서관과의 균형발전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3. 새마을문고 및 작은도서관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다문화도서관 서비스에 관한 사항
5. 민간 참여 및 자원봉사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서관 및 독서진흥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0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소관업무 담당부서장 및 성북문화재단 도서관사업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성북구의원 2명
2. 도서관 및 독서진흥에 관한 전

제20조(수당 등의 지급) 제19조에
따른 위원회 등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
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문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대학교
수, 학교장 등 교육계 전문인사,
문학 작가 등

3. 전문적 지식 또는 경험이 있는
주민

4. 지역의 도서관 관계자 및 독서
문화진흥분야 활동가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3조(수당) 제22조-----

-----.

제21조(위원의 해촉 등) 위원의 해
촉 및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
례」에 따른다.

제22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
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
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
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
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
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신 설>	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⑤ 서기는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24조(운영세칙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

- [별표1] 성북구립도서관의 종류 및 명칭 : 공공도서관에 2023년 4월 개관 예정인 ‘오동숲속도서관’을 추가하였으며, 작은도서관인 ‘이음도서관’을 ‘성북이음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음.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법」 전부 개정에 따라 조례 인용조문의 변경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가. 수정이유 : 자구수정

나. 수정내용

- 제4조의2(구청장의 책무)

○ 구청장은 도서관(대학, 학교 도서관 포함)을 “등” 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상호대차서비스 지원을 “지원” 으로 수정.

○ 제22조(위원회의 운영)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1회 를 2회로 수정.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상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17
----------	--------

제안 연월일: 2023년 4월 24일

제 안 자: 행정기획위원장

1. 수정이유

- 자구수정

2. 주요내용

가. 수정이유 : 자구수정

나. 수정내용

- 제4조의2(구청장의 책무)
- 구청장은 도서관(대학, 학교 도서관 포함)을 “등” 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상호대차서비스 지원을 “지원” 으로 수정.
- 제22조(위원회의 운영)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1회 를 2회로 수정.

3. 참고사항

- 예산조치: 해당 없음
- 기타사항: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제2항 중 “포함”을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상호대차서비스를 지원”을 “지원”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1회”를 “2회”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

성북구립도서관의 종류 및 명칭(제2조 관련)

종 류	명 칭	위 치
공공도서관	성북정보도서관	성북구 화랑로18자길 13
	아리랑도서관	성북구 아리랑로 82
	해오름도서관	성북구 성북로4길 52
	종암동새날도서관	성북구 종암로 98-8
	석관동미리내도서관	성북구 한천로66길 203
	달빛마루도서관	성북구 종암로 167
	정릉도서관	성북구 정릉로 242
	청수도서관	성북구 보국문로16가길 20
	아리랑어린이도서관	성북구 아리랑로 75
	월곡꿈그림도서관	성북구 화랑로13길 17
	장위행복누리도서관	성북구 장위로21다길 53
	성북길빛도서관	성북구 송인로8길 52
	글빛도서관	성북구 길음로7길 20
작은도서관	서경로꿈마루도서관	성북구 서경로 94-1
	성북이음도서관	성북구 보문로 168
	오동숲속도서관	성북구 화랑로13가길 110-1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2(구청장의 책무) ① (생략)	제4조의2(구청장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도서관(대학, 학교 도서관 포함) 자료의 공동이용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수립하고 <u>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상호대차서비스를 지원</u>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 <u>등</u> ----- ----- ---- <u>지원</u> ----- ----- -----.
제22조(위원회의 운영) ① (생략)	제22조(위원회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u>1회</u>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 ----- <u>2회</u> ---- ----- ----- -----.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별표 1] <u>성북구립도서관의 종류 및 명칭</u> (제2조 관련)	[별표 1] <u>성북구립도서관의 종류 및 명칭</u> (제2조 관련)

종류	명 칭	위 치
공공 도서관	성북정보 도서관	성북구 화랑로18자길 13
	아리랑도서관	성북구 아리랑로 82
	해오름도서관	성북구 성북로4길 52
	종암동새날 도서관	성북구 종암로 98-8
	석관동미리내 도서관	성북구 한천로66길 203
	달빛마루 도서관	성북구 종암로 167
	정릉도서관	성북구 정릉로 242
	청수도서관	성북구 보국문로16가길 20
	아리랑어린이 도서관	성북구 아리랑로 75
	월곡꿈그림 도서관	성북구 화랑로13길 17
	장위행복누리 도서관	성북구 장위로21다길 53
	성북길빛 도서관	성북구 송인로8길 52
	글빛도서관	성북구 길음로7길 20
작은 도서관	서경로꿈마루 도서관	성북구 서경로 94-1
	이음도서관	성북구 보문로 168

종류	명 칭	위 치
공공 도서관	성북정보 도서관	성북구 화랑로18자길 13
	아리랑도서관	성북구 아리랑로 82
	해오름도서관	성북구 성북로4길 52
	종암동새날 도서관	성북구 종암로 98-8
	석관동미리내 도서관	성북구 한천로66길 203
	달빛마루 도서관	성북구 종암로 167
	정릉도서관	성북구 정릉로 242
	청수도서관	성북구 보국문로16가길 20
	아리랑어린이 도서관	성북구 아리랑로 75
	월곡꿈그림 도서관	성북구 화랑로13길 17
	장위행복누리 도서관	성북구 장위로21다길 53
	성북길빛 도서관	성북구 송인로8길 52
	글빛도서관	성북구 길음로7길 20
작은 도서관	서경로꿈마루 도서관	성북구 서경로 94-1
	이음도서관	성북구 보문로 168
	오동숲속 도서관	성북구 화랑로13가길 110-10